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안 번호	469
----------	-----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법제업무운용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간 훈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중위생·환경보존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상을 정함(안 제2조).
- 입법예고사항중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 주관국·소장 및 실장(이하“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주관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 기획실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파주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파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